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 고려 설치 〉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8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 고려 설치 ..... | 3 |



## I. 개요

### 1.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8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11.
- (3) 회 부 일 : 2026. 3. 1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 고려 설치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설치 장소인 「관광진흥법」 제52조1)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br>1. ~ 6의2. (생략)<br>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br>-----<br>-----<br>-----<br>-----.<br>1. ~ 6의2. (현행과 같음)<br>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1)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⑧ (생략)

|                                                                                                                                                                           |                                                                                                                                                                                             |
|---------------------------------------------------------------------------------------------------------------------------------------------------------------------------|---------------------------------------------------------------------------------------------------------------------------------------------------------------------------------------------|
| <p><u>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p> <p>7.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u>관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u>&lt;후단 신설&gt;</u></p> | <p>7.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u>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u>-----</p> <p>-----</p> <p>---. <u>이 경우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p>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sup>2)</sup>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sup>3)</sup>)를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관광지등의 AED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관광지등의 AED 의무설치 장소에서 AED가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3)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 현재 관광지등은 대통령령에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AED 의무설치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sup>4)</sup>, 관리사무소 또는 안내시설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는 AED 접근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sup>5)</sup>을 통하여 “AED의 설치 장소는 빠른 시간 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필요 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할 것”, “AED의 설치 대수는 4분 이내 AED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이 AED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현행의 지침이 아닌 법률로써 규율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AED가 개방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것과 같은 부적정한 설치·관리 사례가 지자체 등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음<sup>6)</sup>.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② 별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5)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보건복지부 지침), 2026. 3.

6) <감사 주요 지적 사례>

- 경기도: 감사대상 479개소 중 AED가 상시 개방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곳이 71개소(14.8%), 보관함 없이 보관되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경우가 231개소(48.2%)임. (자료: 경기도 감사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2020. 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통시장 2층 사무실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져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소에 AED가 설치된 사례 (자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 12.)

## < AED 설치 장소 및 대수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

###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원칙

#### ○ 설치 장소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 \*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할 것

#### ○ 설치 대수

-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대수 결정

#### ※ 예시

-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가 없도록 함) 및 동별 설치
- 넓은 면적의 체육관, 유원시설 등 →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또는 계단 근처, 사람 이동이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매표소 또는 안내소
- 대형 쇼핑몰 → 엘리베이터 근처마다 설치, 안내지도 등 위치 표시 필수

자료: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  
(보건복지부 지침, 2026. 3.) 발췌

□ 한편, AED 설치에 있어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 의안번호<br>(대표발의)     | 발의일          | 주요 내용                                                   |
|--------------------|--------------|---------------------------------------------------------|
| 2215310<br>(김남희의원) | '25. 12. 17. |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AED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자료: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관광지등의 설치장소 확대의 경우 그 면적이 넓으며 설치장소 특징이 어려운 점 등 AED 설치·관리 상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3 현행 유지 의견). 안 제47조의2제5항은 AED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후단 신설 문구는 삭제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유지 의견

- AED 설치기준은 시행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보완·개정하여 구체화 가능함.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서 관광지등의 AED 설치장소로 규정된 시설(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은 직관적인 인지, 접근성, 상주인력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 등 관광지등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조치로 판단됨.

□ (대한심폐소생협회) 개정안에서 장소·기관별 AED 설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AED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원실 간 충분한 협의·조율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접근성을 고려한 AED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일반인의 AED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안에 찬성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09 |